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협중앙회장 선거 시 방송연설 도입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수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소시효도 짧아 선거범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

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부터 제30조의7까지 신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며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의9부터 제30조의11까지 신설).

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9조).

바. 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

한 경우 또는 선거비용을 부정으로 지출한 경우 형벌 신설(안 제 66조).

사.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현행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서 30배 이상 80배 이하로 상향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8조).

아. 단서조항에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을 추가(안 제71조).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74조).

차.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거관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7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농협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 방송연설 방법의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방법에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추가하면서, 이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 ② (생략)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행사에서의 정책발표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30조의 명함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하는 등 위탁선거 시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대해 위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고²⁾ 그 결과 후보자의 능력 및 정책기조를 검증할 기회가 많지 않아 소위 ‘깜깜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³⁾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한정하여 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후보자의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보다 폭넓게 전달하여 정책경쟁에 입각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1)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 2) 공직선거의 경우 상기한 방식 외에 거리연설, 확성장치 사용, 방송연설 및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의 선거운동방법도 가능하나, 위탁선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3) “농민들의 삶과 밀착된 의제에 대한 논의도 실종됐다. 투표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견발표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남도일보, “<기자현장>농협중앙회장 ‘깜깜이 선거’ 언제까지...”, 2020.1.29.

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 시 유권자의 수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경우 1,100명 가량이고, 현재 추진중인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더라도 약 187만명인바,⁴⁾ 「공직선거법」 제71조가 대한민국의 보통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⁵⁾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선거 등에 한하여 전국단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⁶⁾⁷⁾

또한 방송연설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탁단체 중 하나인 농협의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동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연합뉴스, “유권자 187만명·선거비 수백억원...’농협직선제’ 뭐가 달라지나”, 2026.5.25.

...농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천110명)와 달리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수치다...

5)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44,649,908명이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9,908명 확정”, 2026.5.23.

6)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7)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방송연설 도입 시 전국단위 방송시설을 사용하여야 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공공단체등의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 단체의 선거운동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고,

농협중앙회장선거는 선거인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KBS 1TV, MBC, SBS, YTN, 연합뉴스TV, 종합편성채널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공직선거에서는 위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점 등 위탁선거의 중요도·공직선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2.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규정 신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운동 관련 사무처리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후보자를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두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⁸⁾

다만, 앞서 검토한 것처럼 농협중앙회장 선거 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⁹⁾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안 제30조의7제2항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 제24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후보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지정하는 1명’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⁰⁾ 후보자를 제외한

8)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제61조(選舉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9) 농협중앙회장 선거 시 법 제24조에 따라 선거공보(§25), 전화·문자메시지(§28, §30의3), 정보통신망(§29), 명함(§30), 선거일 소견발표(§30의2), 공개행사 정책발표(§30의4)의 선거운동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10)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30조의4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가능자 1명 중에서 복수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안 제30조의7제3항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4조의3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¹⁾

한편, 해당 조항들도 농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인바, 앞서 검토한 것처럼 농협이라는 개별 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상 허용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방법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에 준하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은 도입의 실익이 적다고 보인다는 입장임.

3. 선거비용의 등록·제한 및 선거비용 보전 등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11) 법 제24조의3(활동보조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8(선거비용의 등록과 공개)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 ② 후보자(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 및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0조의9(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30조의10(선거비용의 제한액 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인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에 활동범위를 고려한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

<신 설>

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공고 등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11(선거비용의 보전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각 호의 득표율에 따라 그 보전비율을 달리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비용을 보전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미반환(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의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선거비용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는 한편, 득표율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도록 하여 후보간 자금력의 차이에 의한 유불리를 줄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선거비용 등록 및 공개, 선거비용 제한액 설정 등 관련 개정안의 내용 》

구 분	현 행	개정안
선거비용의 등록과 공개 (안 §30의8 신설)	-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① 선거비용 범위 규정 ② 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선거비용 제한액 설정 등 (안 §30의9~§30의11 신설)	-	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 ② 선거비용제한액 설정 ③ 선거비용의 보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다만, 앞서 검토한 것처럼 동법 내에 농협이라는 개별 단체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도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선거비용보전금액은 안 제30조의 11에 따라 위탁단체인 농협중앙회의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선거비용보전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규모 및 중앙회의 재정여력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함께 이러한 선거비용보전 방안에 대한 조합 내부의 의견 청취 절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위탁단체에서 부담

하게 되는데, 전국단위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에 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선거공영제가 도입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보전금액 결정 등을 국가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민간단체이므로, 민간단체 예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개정안은 현행법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의 수준을 상향하고, 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에 따른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규정을 위반한 자와 안 제30조의 10의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u>3</u> 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 <u>5</u> <u>년</u> ----- <u>5천만원</u> -----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을 위반

<신 설>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후보자·선거사무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0배-----80배-----

5천만원으로-----.

-----.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며, 제3자 등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¹²⁾

또한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3천만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법의 처벌 한도를 5년 및 5천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는 30배 이상 80배 이하(5천만원 한도)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결과적으로 위탁선거에서 금권선거의 가능성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2) **법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보궐선거등: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57조가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동법 제261조제9항이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³⁾ 개정안은 「공직선거법」보다 그 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인바,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처벌 및 과태료 수준 상향 관련 내용 비교 》

구 분	현행	개정안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처벌 강화 (안 §5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징수 (안 §68)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30배 이상 80배 이하(상한액 5천만원)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13) 「공직선거법」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특히, 주민 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영향력이 전국 단위로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는 기본적으로 위탁단체 내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서 그 영향력과 법 위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보다 더 강화된 처벌 및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은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바, 관련 조항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조사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

개정안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대상자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를 추가하고,¹⁴⁾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는 경우 형의 감경·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협조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의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14) **법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료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u>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5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
--	--

현행법 제74조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 등을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¹⁵⁾

법 제59조는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바, 법 제35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59조가 아닌 법 제68조제3항이 적용됨.

15) **법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의 본문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

적용조항	적용대상	처벌 및 과태료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법 제59조)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법 제35조제1항)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법 제35조제2항)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가 금지된 자의 기부또는 이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법 제35조제4항) -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한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법 제35조제5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68조제3항)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가 금지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법 제35조제3항)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3천만원 한도)

※ 각 법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은 법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가 금지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를 추가하고,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는 경우 형의 감경·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협조자의 신원·제보내용 등의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6. 공소시효 연장,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현행	개정안
제71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1조(공소시효) ----- ----- ----- ----- ----- ----- -----하며, 위탁단체 <u>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u> <u>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u> <u>에 따른다.</u>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u>사람에게</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u>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제2호에</u> 해당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의 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 ----- ----- -----<u>사람이나 제74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u><u>에게</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u>-----<u>지급 규모 등과 제2항제2호에</u>----- ----- ----- -----.
---	--

「공직선거법」 제268조제1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¹⁶⁾ 이는 선거범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당선자가 임기를 거의 마치거나 이미 종료된 시점에 사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선거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16)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현행법도 「공직선거법」과 같이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위탁단체의 개별법령에서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선거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기소할 수 없는 문제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각 단체별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경우 사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재 공직선거관여금지·선거운동제한·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은 각 법률의 처벌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음.¹⁷⁾¹⁸⁾

17)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벌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벌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제132조(벌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18) 전종덕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농업협동조

안 제76조제1항은 포상금 대상자에 안 제74조제3항¹⁹⁾의 조사협조자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자수 후 조사 등에 협조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 협조를 명분으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3

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6)」에 선거와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9)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에 대한 규정임.